04_07. 진로변경차(끼어들기 사고)와 후속직진차량간의 사고

판결요지	이륜차 등과실	사건번호
17:25경 편도 2차선의 2차선 버스 운행, 왼쪽으로 진입로, 30m전방 같은 방향의 자전거 발견, 앞에서 위 진입로로 좌회전하는 원고 자전거 뒤늦게 발견, 반대차선 1차선에서 충격, 피해 자전거도 수신호, 뒤의 차량 안본 잘못 30%	30%	서울고법 87나749
야간, 앞뒤차량 사이에서 도로 우측변에 정차 중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서 출발하다가 좌측 후방에서 오는 원고 자전거를 피고 봉고 1톤트럭 좌측 앞바퀴로 충격, 노폭 15.5m 보차도구분없는 시장내 도로, 복잡한 교통. 원고과실20%	20%	서울고법 87나626
편도1차선 도로 우측 포장부분 밖에서 승객 하차 시키고 방향지시기 안켠 채 곡바고 도로 진입한 피고 택시 좌측 후방에서 달려오던 원고 오토바이 충격, 야간. 원고과실 30%	30%	서울고법 86나4729
편도2차선 도로의 1차선을 진행하던 택시가 승객하차 위해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 변경, 2차선으로 뒤에서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. 오토바이운전자과실 30%	30%	서울고법 90나6004
편도4차선 도로의 3-4차선에 걸쳐 진행하던 피고 트럭이 우측 주유소에 진입위해 갑자기 우회전, 4차선에서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충격, 오토바이과실 40%	40%	서울고법 90나19604
오전(08:05)에 편도3차선 중 2차선상을 따라 50km로 진행하던 차량이 3차선으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다 마침 동일방향 3차선에서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에,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 해태를 이유로 20%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	20%	서울지법 남부지원 93가단58763
오전(10:20)에 농원 앞 갓길있는 편도1차선 도로를 50km로 진행하던 화물차가 차량후방에서 과속으로 질주하여 우측으로 근접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오른쪽 길가로 밀어붙여 균형을 잃게하여 전도되게 한 후 충격한 사고에서, 차량운전자에게 사고지점은 포크레인이 도로 우측변을 막은 채 포장공사 중으로 비정상적 상황이고 후방에서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운행하여 오자 위협경쟁운전한 과실을 감안하여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차량 우측에 근접하여 무리하게 과속하여 균형을 잃고 전도되어 사고를 자초한 사실에 근거하여 90%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	90%	수원지법 92가합6818
편도2차로 도로 2차로 따라 오토바이로 직진중 오른쪽 골목길에서	20%	서울고법

우회전하여 선행하려는 트럭 뒷부분에 충돌, 오토바이 과실 20%		86나771
편도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3차로에서 우회전하려던 덤프트럭에 충격된 사고, 덤프트럭 우회전 방향지시등 작동 중인 상태, 오토바이과실 30%	30%	서울고법 87나2003
편도4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주행 중인 가해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4차로를 주행 중인 원고 오토바이 충격, 원고는 무면허, 원고과실 20%	20%	서울고법 88나23351
야간에 편도1차로 지방국도에서 직진중 맞은편에서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하는 자전거 충격, 자전거 과실 50%	50%	서울고법 90나1157
원고 오토바이가 좌측 농로에서 좌회전하여 국도 상으로 진입하다 직진 중인 피고 차와 충돌, 원고가 선진입한 경우 원고 과실 50%	50%	서울고법 90나587
주간에 승용차가 주택가의 골목길을 나와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간선도로의 1, 2차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하다가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 충격, 2차로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차량 주의하지 아니한 오토바이 과실 20%	20%	부산고법 92나4512
오토바이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앞으로 달려 든 경우,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의무는 없음	100%	대법원 95다44153
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장소를 법정제한 속도보다 약10킬로 정도 초과하여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편도 4차로 도로의 우측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도로를 가로질러 자동차의 진행 방향인 1차로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데 대하여 책임없음.	100%	대법원 97다35894
야간에 승객을 하차시킨 택시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채 곧바로 도로로 진입하다가 택시 좌측후방에서 달려오던 원고 운전 이륜차를 충격한 사고에 대해 원고(이륜차)의 과실을 30%로 인정한 사안	30%	서울고법 86나4729
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, 2차선 진행하던 이륜차를 충격한 사고에 있어 이륜차의 과실을 30%인정한 사안	30%	서울고법 90나6004